

제326회 임시회
2014. 1. 24.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행정문화위원회

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2014. 1. 24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4년 1월 8일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1월 22일

-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강호동)

가. 제안이유

○ 우리 도의 포도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, 와인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·개발 기능을 담당할 와인연구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신설(안 제25조, 별표 1)

- 명칭 : 와인연구소

- 위치 : 영동군 관내
- 기능 : 고품질 와인 연구, 제조기술 개발·보급, 와인제조
기술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특성화
사업 추진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한철우)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의 포도 가공산업 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와인 연구 개발 기능을 담당할 영동군 소재(영동읍 매천리) 와인연구소가 금년도 1월 5일에 준공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 25조제2항의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에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0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1월 8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우리 도의 포도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, 와인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·개발 기능을 담당할 와인연구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신설(안 제25조, 별표 1)
 - 명칭 : 와인연구소
 - 위치 : 영동군 관내
 - 기능 : 고품질 와인 연구, 제조기술 개발·보급, 와인제조 기술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포도연구소, 마늘연구소, 수박연구소, 대추연구소, 잠사 시험장”을 “포도연구소, 마늘연구소, 수박연구소, 대추연구소, 와인연구소, 잠사시험장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(제25조제3항 관련)

명 칭	위 치
포도연구소	옥천군 관내
마늘연구소	단양군 관내
수박연구소	음성군 관내
대추연구소	보은군 관내
<u>와인연구소</u>	<u>영동군 관내</u>
잡사시험장	청주시 관내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5조(특화작목시험장) ① 기술원에 도 특화작목의 품종개량, 재배방법 개선, 생리생태, 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시험장을 둔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<u>포도연구소, 마늘연구소, 수박연구소, 대추연구소, 잠사시험장</u>을 둔다.</p> <p>③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</p>	<p>제25조(특화작목시험장) ① 기술원에 도 특화작목의 품종개량, 재배방법 개선, 생리생태, 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시험장을 둔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<u>포도연구소, 마늘연구소, 수박연구소, 대추연구소, 와인연구소, 잠사시험장</u>을 둔다.</p> <p>③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6조(지방농촌진흥기구) ①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·농촌지도사업·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을 두며,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·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으로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·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과 시장·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,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.

③ 농업기술원에는 원장(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을 말한다)을 두며, 원장은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의 명을 받아(소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시장과 군수의 명을 받는다)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기술원·농업기술센터와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농업기술원에 국이나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, 농업기술센터에 과나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, 국·과와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⑥ ~ ⑧ (생략)